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金炳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841 발의연월일: 2022. 6. 9.

발 의 자:金炳旭・강대식・구자근

김석기 · 김태호 · 김형동

류성걸 • 백종헌 • 양향자

유의동 • 정우택 • 태영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원 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·운영하거나 교습비 등을 신고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하는 등의 경우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학원 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법률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신규로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 신고를 하거나,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하 여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학원 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 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4항 및 제14조제13항 신설). 법률 제 호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학원설립·운영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(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.

제14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(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는 제9항에따른 교습소의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폐원신고 및 폐소신고 제한에 대한 적용례) 제10조제4항과 제14

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10조(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) | 제10조(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) |
| ① ~ ③ (생 략) |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④ 학원설립·운영자는 제17조 |
| |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|
| |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|
| | 중인 기간(행정절차법 제21조 |
| | 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 |
| | 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 |
| | 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는 |
| |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|
| | <u>수 없다.</u> |
| 제14조(교습소 설립・운영의 신 | 제14조(교습소 설립・운영의 신 |
| 고 등) ① ~ ⑫ (생 략) | 고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③ 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 |
| | 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|
| |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|
| | (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 |
| | 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 |
| | 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|
| | 말한다) 중에는 제9항에 따른 |
| | 교습소의 폐소신고를 할 수 없 |
| | <u>다.</u> |